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9 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안 별표 1)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12.7. ~ 12.11.)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923회, 2024. 2. 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4 - 9 호

「화장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3호, 2023.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2 월 7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트리플루페리돌란 다음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533-73-3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u>원료명</u>	CAS No.	화학물질명	<u>원료명</u>	CAS No.	화학물질명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트리플루페리돌	749-13-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1,2,4-트리하이 드록시벤젠</u>	<u>533-73-3</u>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